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하나HSBC생명보험(주)

확인서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6월 12일

하나 HSBC 생명보험(주)

선임계리사 서 종 무 (인)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명 칭 | |
|------|---------------------------|
| 주보험 | 무배당 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
| 종속특약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배우자형) |
|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교통재해장해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질병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재해상해치료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산업재해사망특약 |
| | 무배당 산업재해장해특약 |
| | 무배당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특약 |
| | 무배당 암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암사망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암치료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2대성인병진단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수술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입원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특정상병통원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 | 무배당 고도질병장해보장특약(본인형, 배우자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1년만기 | 전기납 | 최초계약 : 만 15세~80세 |
| | | 재계약 : 만 16세~80세 |

3.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4.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 100만원
종속특약 : 1,000만원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6.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외 보험료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1) 대상단체

-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제(1)호의 (나)항 및 (다)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무) 산업재해사망특약 및 (무) 산업재해장해특약의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관한 사항

- (1) 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기타의 단체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위험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6단체로 한다.

| | |
|----------|--------------|
| 제 1 종 단체 | 광업 |
| 제 2 종 단체 | 제조업 |
| 제 3 종 단체 | 건설업 |
| 제 4 종 단체 |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 제 5 종 단체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제 6 종 단체 | 기타 |

라.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 보험료의 수수

- (1)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단일나이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중 남, 여 성별 단일나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특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또는 재계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의 체결시 또는 재계약시 회사의 보험요율에 따라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재계약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 (나) 제(가)항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년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다) 계속하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평균보험요율이 직전보험년도의 평균보험요율에 3%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직전 보험년도의 평균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 (4) 동일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율,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 (5)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및 개별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변경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같은 성(性)에 한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에 남·여 성별 단일보험료가 아닌 특약이 부가된 경우 또는 보험금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다.
- (3)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한다.

사.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에 대하여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대한 보험료 할인” 중 높은 할인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정사업비 내에서 할인을 한다.

(1)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

(가) 할인대상

동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나) 할인율

동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환산연납영업보험료 | 할인율 |
|-------------------------|-----|
| 100만원 미만 | 0% |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 |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3% |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16% |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9% |
|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21% |

| | |
|---------------------|-----|
|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4% |
| 1억원 이상 | 26% |

환산연납영업보험료의 계산은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K를 곱한 값으로 한다.

|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
| K | 12 | 4 | 2 | 1 |

(다) 할인액 산출방법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 할인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대한 보험료 할인

(가) 할인대상

동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가 100명 이상인 계약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나) 할인율

동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 | 할인율 |
|--------------|-----|
| 99명 이하 | 0% |
| 100명 ~ 199명 | 5% |
| 200명 ~ 299명 | 7% |
| 300명 ~ 499명 | 10% |
| 500명 ~ 699명 | 15% |
| 700명 ~ 999명 | 20% |
| 1,000명 이상 ~ | 25% |

(다) 할인액 산출방법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 할인을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 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